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05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박홍배 · 민병덕 · 이광희
박상혁 · 김현정 · 서미화
박정현 · 홍기원 · 전진숙
조계원 · 이정현 · 박지원
김태년 · 박 정 · 정태호
김준환 · 이정문 · 이수진
김남근 의원(19인)

제안이유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해임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에 인하여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우선, 현행법령은 공개매수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기준이 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그에 따른 위임행위는 특정 주주와 결탁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과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특별관계

로 해석되어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목적으로 보고한 경우에 주식등의 추가 취득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으며 독립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등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원의 선임·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기금 등이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행사하는 주주권 행사 역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과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본인과 합의에 따른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3조제3항).

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구체화함(안 제147조 및 제150조).

- 1) 보고하여야 하는 보유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함.
- 2)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의 방법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범위에서는 독립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등을 제외함.
-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공적연기금을 명시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제3항 본문 중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인의 특수관계인
2.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나.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다만,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유 목적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제368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과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가. 임원(「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제외한다)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인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은행

라.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운용하거나 운용을 위탁받은 자

마. 그 밖에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전문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50조제2항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⑤ (생략)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1. 본인의 특수관계인

2.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나.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다만,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

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
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
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
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
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
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
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

1. 보유 목적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제368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신 설>

것과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가. 임원(「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원은 제외한다)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은행

라.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